

교내 전산망 서비스 지침

제정 2014. 9.18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(이하 “우리대학교”) 전산망을 합리적으로 관리·운영하여 우리대학교 구성원에게 원활한 교육·연구·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포트” 라 함은 다른 장치에 접속되는 물리적 또는 논리적 위치를 말한다.
2. “랜(LAN)” 이라 함은 통신장비 또는 컴퓨터 연결을 위해 사용되는 통신선을 말한다.
3. “통신장비” 라 함은 전산망 구성을 위한 통신접속 장비 (라우터, 스위치 등)를 말한다.
4. “건물 내 전산망 장비실” 이라 함은 통신장비 및 분배 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을 말한다.
5. “VPN” 이라 함은 데이터를 송·수신 구간에 암호·복호화 하여 인터넷망과 같은 공중망을 사설망(전용회선)처럼 이용해 회선구간의 보안을 강화시킨 통신서비스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 대학본부 전산망은 우리대학교 학칙과 예산·회계에 적용 받는 교육조직, 행정부서, 부속기관, 법인 등으로서 해당 기관장이 건물 내 전산망 장비실을 확보하고 정보전산원장이 승인한 경우에만 한하여 지원한다.

② 제1항을 제외한 지역은 자체적으로 전산망을 구축하여 정보전산원장의 승인을 얻어 본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교내전산망에 연결할 수 있다.

(건물 내 전산망 장비실, 지역대학의 경우 전산실)

③ 교내 전산망 장비보호 및 전산망 보안을 위하여 시건 장치가 구비되고 통풍 및 환기되는 최소 3㎡이상의 독립 공간과 안전한 전원을

제공하여야 하며, 우리대학교 「보안업무 처리규정」 제10조(보호구역의 지정)에 의거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며 제11조(보호구역의 관리)에 따라 관리책임자, 관리부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.

④ 한번 설치된 시설물은 이전할 수 없으며, 설치 장소의 용도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정보전산원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4조(전산망 포트지원) ① 정보전산원에서 신축건물 교수연구실 기준으로 실당 3포트 이상을 지원하며, 실에서 3대 이상 네트워크를 접속하고자 할 경우 정보전산원이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.

② 포트 신청과 사무실 등에서 20대 이상 네트워크를 접속할 때에는 추가 포트설치에 대하여 정보전산원과 협의할 수 있다.

③ 실 구조 변경이나 인테리어 공사 시 기존의 네트워크 포트는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증설되는 경우 네트워크 포트도 공사에 포함하여야 한다.

제5조(무선랜 지원) ① 학내 공공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대학자체의 무선랜(wi-fi)이 아닌 통신 사업자의 무선랜 장비를 이용하여 무선랜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인증 방법은 별도로 지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.

② 정보전산원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자가 직접 무선중계기(AP)를 설치할 수 없으며, 정보전산원이 철거 요청 시 즉시 철거한다.

③ 통신 사업자간 무선중계기(AP) 설치 시 주변의 무선중계기(AP)간에 간섭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최대한 채널을 조정하여 설치하도록 한다.

④ 무선랜의 통신 범위는 대학본부 및 지역(시군포함)대학으로 한정하여 서비스 할 수 있다.

제6조(신·증축 건물의 통신시설 및 장비) ① 학내 신·증축 건물의 교내전산망 시설부분은 시설담당부서(또는 시설지원과)에서, 교내 전산망 장비부분은 정보전산원에서 각각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1. 정보전산원은 네트워크 장비, 사용자케이블(Outlet↔PC)을 제공한다.

2. 시설담당부서는 전산망장비실(랙 포함), 건물인입 광케이블, 패치 패널(네트워크장비 연결 케이블 포함)을 제공할 수 있다.
 - ② 신·증축건물이 네트워크 장비가 포함된 공사이거나 기부채납 건물인 경우에는 모든 장비와 광 및 UTP 패치코드까지 포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.
 - ③ 건물 설계 시 시설담당부서는 랜(LAN) 시설에 대하여 반드시 정보전산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설계한다.
 - ④ 모든 신·증축 건물의 시설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통신 시설이 포함되어 시공되어야 한다.
1. 광케이블은 Single-Mode 광케이블(LC타입) 8 Core 이상을 기본으로 설치하며 상위 접속지점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정보전산원과 사전 협의한다.
 2. 건물 내의 모든 실에 UTP케이블 2회선 이상(2구 Outlet 포함) 설치한다. UTP 케이블은 CAT.6e 이상으로 하며, 그 길이는 75m를 초과할 수 없으며, 75m를 초과하는 대형 건물에는 정보전산원과 협의하여 Multi-Mode(LC타입) 광케이블을 포설한다.
 3. 전산망장비실의 랙(Rack)은 FDF, Patch Panel, 장비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. 랙 전원은 단독으로 설치하며 UPS전원 활용을 권장한다.
 4. 준공 시 케이블(광, UTP) 도면과 시험성적서, 선번장에 대하여 서류 및 CD로 각1부씩 정보전산원에 제출하고 정보전산원과 협의하여 Patch Panel, Outlet, 패치 코드에 라벨을 부착한다.

제7조(네트워크 장비의 유지보수) ① 각 부서는 다음의 경우 정보전산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자체 예산으로 전산망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전산망 사업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부서에서 전산망 요구 시기에 공급해 줄 수 없는 경우
2. 전산망 장비 제공 기준 보다 상위 사양으로 기관 내 장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서에서 자체예산을 추가 투입할 의사가 있는 경우
3. 전산망과 별개로 망을 구축하여 자체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

- ② 자체 구입한 전산망 설비의 경우, 전산망 전체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입 부서에서 유지보수를 진행한다.

제8조(IP주소관리) ① IP주소 부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.

1. IP주소는 교내전산망에 연동되어 있는 컴퓨터를 대상으로 부여하며 정보전산원에 요청한다.
2. IP주소 할당은 담당자(또는 부서 책임자)의 승낙이 있어야 하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회수할 수 있다.
3. 1개의 MAC 주소 당 1개의 IP주소를 할당한다.
- ② 6개월간 미사용 IP주소는 해당 부서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회수할 수 있다.
- ③ 정보전산원에서는 전산망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IP 및 단말 관련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.
- ④ 할당된 IP주소에 대한 민원 및 보안사고 등의 법적 문제가 제기될 경우는 IP주소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.

제9조(호스트명 관리) ① 호스트명 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.

1. 교내전산망에 연동된 호스트이며 운영체제가 다중사용자 환경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경우 도메인을 신청할 수 있다.
 2. 호스트명 신청은 IP주소, 호스트명을 기재하여 공문으로 신청한다.
 - ② 미사용 등으로 인해 자동 반납된 IP주소와 연계된 호스트명, 메일 서버, 네임서버는 IP주소 반납처리 시 자동 반납된다.
 - ③ 호스트명을 이용하는 서버는 정보보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 - ④ 다음 각 호의 경우 호스트명 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수 있다.
1. 음란사이트 운영
 2. 상업적 용도의 사이트 운영
 3. 지적소유권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 미 이행
 4. 기타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 게재

제10조(네트워크 관리) ① 정보전산원에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무단 IP주소 사용자 및 영리목적 사용자는 네트워크 접근을 차단한다.
2. 트래픽 관리, 이상 유·무 진단, 장애 예방 및 감지를 위해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.
3. 과도한 트래픽 유발로 회선 이용을 점유하거나 장애 트래픽, 보안 사고 관련 트래픽 등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, 특정 그룹 및 이용자에 대해 개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, 다수의 이용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네트워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4. 제3호의 경우로 긴급히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거나 정보보안 사고 장비로 신고가 접수된 경우, 추가감염 및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장비를 사전 통보 없이 네트워크를 차단할 수 있다.
5. 보안사고 및 유해트래픽 등을 발생시키는 IP주소로 확인된 경우는 사고 해결 및 추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에 한해서 네트워크 재접속을 허용한다.
6.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대다수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차단 및 정책 변경이 필요할 경우는 공지 후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.
7. 게임 및 증권사이트 등 학술·연구에 부적합한 사이트는 공지 후 사용을 차단할 수 있으며, 교육사이버안전센터에서 공지하는 유해 IP는 즉시 사용을 차단할 수 있다.

제11조(교육전산망관리) 통신회선은 교육전산망을 활용하며,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.

1. 회선 신·증설 및 해지 등의 청약업무 수행
2. 교육전산망에서 운영하는 교육활동 지원업무
3. 교육전산망 회선 사용료 납부 의뢰
4. 서비스 피크타임 시 회선대역폭 조정

제12조(VPN 관리) ① 지역대학과 대학본부 구간의 VPN 품질보증 활동을

통해 사용자들의 서비스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.

1. 지역대학 신축 또는 위치변경 시 증설 및 변경 수행
2. 대학본부와 지역대학간 통신망 상시 모니터링
3. 통신망 장애 시 복구를 위한 통신사업자, 각 지역대학과 협조체계 유지

제13조(장비 도입 및 불용) 장비의 도입 및 불용에 관련한 사항은 「물품관리법관계규정」에 따른다.

제14조(기타) 이 지침에 언급되어 있지 않는 관한 사항은 「한국방송통신 대학교 정보보안 기본지침」 등 상위 법령·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